

2022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I. 결산현황

1. 세입결산

- 예산현액 : 162억 8천 6백만원
- 징수결정액 : 162억 8천 6백만원
- 실제수납액 : 162억 8천 6백만원
- 결손처분액 : 0 원
- 미수납액 : 0 원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100.0%(전년도 0.0%, 세입현황 없음)임.

〈 2022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결손처분액(D)		미수납액 (E)= (B)-(C)-(D)	예산 수납률 (C/A)	징수율 (C/B)
				불납	시효			
합 계	16,285,674	16,285,674	16,285,674	0	0	0	100%	100%
세외수입	1,802	1,802	1,802	0	0	0	100%	100%
경상적세외수입	11	11	11	0	0	0	100%	100%
이자수입	11	11	11	0	0	0	100%	100%
기타이자수입	11	11	11	0	0	0	100%	100%
임시적세외수입	1,791	1,791	1,791	0	0	0	100%	100%
보조금 반환수입	1,791	1,791	1,791	0	0	0	100%	100%
자체보조금반환수입	1,791	1,791	1,791	0	0	0	100%	100%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결손처분액(D)		미수납액 (E)= (B)-(C)-(D)	예산 수납률 (C/A)	징수율 (C/B)
				불납	시효			
지방교부세	200,000	200,000	200,000	0	0	0	100%	100%
지방교부세	200,000	200,000	200,000	0	0	0	100%	100%
지방교부세	200,000	200,000	200,000	0	0	0	100%	100%
특별교부세	200,000	200,000	200,000	0	0	0	100%	100%
보조금	16,083,872	16,083,872	16,083,872	0	0	0	100%	100%
국고보조금 등	16,083,872	16,083,872	16,083,872	0	0	0	100%	100%
국고보조금등	16,083,872	16,083,872	16,083,872	0	0	0	100%	100%
국고보조금	16,083,872	16,083,872	16,083,872	0	0	0	100%	100%

※ 결손처분액 = 불납결손액 + 시효결손액, 미수납액은 다음연도 이월액

2. 세출결산

- 당초예산 : 193억 8천 7백만원
- 예산증감 : 10억 2천 4백만원
- 예산현액 : 204억 1천 1백만원
- 지출액 : 184억 9천 7백만원
- 이월액 : 8억 4천 8백만원
- 불용액 3억 3백만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1.5%(전년도 18.1%)가 발생
 - 불용사유별 금액

- 집행잔액 사유별 금액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천 1백만원, 낙찰차액 6백만원, 지출잔액 2억 3천 6백만원임.

< 2022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사업별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D)	집행잔액 (E=A-B-C-D)	불용률 (%)
총 예산	20,410,734	18,496,626	848,098	762,608	303,401	1.5%
사업예산계	20,240,607	18,354,346	848,098	762,608	275,556	1.4%
서울형 자치경찰 조기정착 기반 마련	1,828,355	1,134,140	314,220	218,461	161,535	8.8%
자치경찰 제도 정비	1,411,355	1,031,360	0	218,461	161,535	11.4%
서울시 자치경찰제 홍보	247,000	237,554	0	0	9,446	3.8%
공정하고 균형 있는 자치경찰 인사관리 운영	79,600	24,067	0	0	55,533	69.8%
자치경찰 위원회 운영	175,555	85,066	0	0	90,489	51.5%
서울시 치안 연계 사업 지원 강화	107,200	107,134	0	0	66	0.1%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D)	집행잔액 (E=A-B-C-D)	불용률 (%)
서울형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60,000	54,000	0	0	6,000	10.0%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	742,000	523,539	0	218,461	0	0.0%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유기적 결합 추진	417,000	102,780	314,220	0	0	0.0%
1인 여성가구 사회안전망 체계 구축	395,000	80,780	314,220	0	0	0.0%
한강공원 안전확보 강화방안	22,000	22,000	0	0	0	0.0%
시-경찰 협력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구축	1,041,910	843,752	120,000	14,995	63,162	6.1%
시-경찰 협력 강화	155,800	105,855	20,000	14,995	14,949	9.6%
자치경찰 유관기관 상시협력 체계 구축	65,800	50,851	0	0	14,949	22.7%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	90,000	55,005	20,000	14,995	0	0.0%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정착	886,110	737,897	100,000	0	48,213	5.4%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	100,000	51,846	0	0	48,154	48.2%
지하철 안전 확보	30,000	29,991	0	0	9	0.0%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교통경찰지원	280,000	280,000	0	0	0	0.0%
자치행정과 치안행정이 연계된 시민 교통편의 제공	176,110	176,060	0	0	50	0.0%
자율방범대연합회 지원	100,000	100,000	0	0	0	0.0%
지역맞춤형 자치경찰 주민체감 사업	100,000	100,000	0	0	0	0.0%
지역맞춤형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 사업	100,000	0	100,000	0	0	0.0%
효율적인 자치경찰 사무 추진 지원	17,370,342	16,376,453	413,878	529,153	50,859	0.3%
자치경찰 복지 증진 및 인권 감사	2,179,433	2,090,498	0	38,077	50,859	2.3%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D)	집행잔액 (E=A-B-C-D)	불용률 (%)
자치경찰공무원 후생 복지 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	2,006,670	1,967,368	0	0	39,302	2.0%
자 치 경 찰 교 육 및 인 권 · 감 사 운 영	111,800	100,243	0	0	11,557	10.3%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 무 기 구 운 영	60,963	22,887	0	38,077	0	0.0%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15,190,909	14,285,955	413,878	491,076	0	0.0%
협업치안인프라 강화	280,700	280,700	0	0	0	0.0%
지역사회안전진단 및 범죄예방	106,500	104,734	0	1,766	0	0.0%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434,700	387,200	47,500	0	0	0.0%
불법풍속사범 단속역량 강화	46,100	44,238	0	1,862	0	0.0%
유실물업무 종합관리 운영	55,700	47,625	0	8,075	0	0.0%
방범용 CCTV 운영	152,400	120,588	0	31,812	0	0.0%
지하철경찰대 등 운영 및 특수지역 경찰 활동	411,910	411,547	0	363	0	0.0%
지하철경찰대 등 운영 및 특수지역 경찰활동(자본보조)	198,800	173,944	0	24,856	0	0.0%
관 광 경 찰 대	257,460	257,358	0	102	0	0.0%
관 광 경 찰 대 (자 본 보 조)	11,680	11,563	0	117	0	0.0%
학 교 폭 력 예 방 활 동	327,100	326,900	0	200	0	0.0%
학교폭력 예방활동(자본보조)	8,411	8,411	0	1	0	0.0%
위 기 청 소 년 선 도	691,600	690,666	0	934	0	0.0%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 체계	133,500	133,299	0	202	0	0.0%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 체계 (자 본 보 조)	4,849	4,849	0	0	0	0.0%
아 동 안 전 지 킴 이 집 운 영	137,000	137,000	0	0	0	0.0%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근절	69,900	69,900	0	0	0	0.0%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및 지원	91,100	90,997	0	103	0	0.0%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D)	집행잔액 (E=A-B-C-D)	불용률 (%)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및 지원 (자 본 보 조)	3,200	3,200	0	0	0	0.0%
사회적 약자 성폭력 피해 예방	64,300	64,182	0	118	0	0.0%
사회적 약자 성폭력 피해 예방 (자 본 보 조)	14,000	14,000	0	0	0	0.0%
가 정 폭 력 등 통 합 솔 루 션 팀 운 영	62,400	62,341	0	59	0	0.0%
가 정 폭 력 학 대 다 기 관 협 업 체 계 강 화	2,000	2,000	0	0	0	0.0%
직 접 경 비	9,853	9,853	0	0	0	0.0%
민 간 경 상 보 조	6,241,389	6,241,389	0	0	0	0.0%
부 대 경 비	186,678	186,678	0	0	0	0.0%
교 통 흥 보 활 동	298,676	298,675	0	1	0	0.0%
협 력 단 체 지 원	481,894	481,892	0	2	0	0.0%
교 통 장 비 , 운 영 비	80,170	80,169	0	1	0	0.0%
교통장비, 운영비(자본보조)	48,170	47,981	0	189	0	0.0%
기 타 교 통 활 동 지 원	391,376	345,031	45,500	845	0	0.0%
음 주 단 속 장 비 운 영	148,725	148,725	0	0	0	0.0%
무 인 단 속 장 비 운 영	1,507,655	1,449,407	0	58,248	0	0.0%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운영	979,213	704,879	0	274,334	0	0.0%
무 인 교 통 단 속 장 비 구 매	1,221,000	813,252	320,878	86,870	0	0.0%
음 주 단 속 장 비 구 매	30,800	30,784	0	16	0	0.0%
일 반 예 산 계	170,127	142,281	0	0	27,846	16.4%
기 본 경 비	170,127	142,281	0	0	27,846	16.4%

가. 예산 이용 : 해당 없음.

나. 예산 전용

- 예산편성 시 통계목 오류 경정을 위해 「교통장비, 운영비(자본보조)」
(사무관리비 ⇒ 자산및물품취득비)사업에서

4천 8백만원

총 1건, 4천 8백만원을 전용하였음.

다. 예산 이체 : 해당 없음.

라. 예산의 변경사용

- 보조사업자가 관내 모든 의료기관에 물품을 지원·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서울시가 주체가 되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개선」 (민간경상사업보조 ⇒ 사회보장적수혜금)사업에서

5천 4백만원

총 1건, 5천 4백만원을 변경사용하였음.

마. 예비비 사용 : 해당 없음.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명시이월

사업진행 지연으로 '자치경찰총괄과'에서 「1인 여성가구 사회안전망 체계 구축」 사업비 명시이월 2억 9천 4백만원

사업진행 지연 및 하반기(9월) 특별교부세 교부로 '자치경찰협력과'에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 「지역맞춤형 지방행정과 치안 행정 연계사업」 사업비 명시이월 1억 2천만원

총 3건, 4억 1천 4백만원,

○ 사고이월

사업진행 지연으로 '자치경찰총괄과'에서 「1인 여성가구 사회안전망 체계 구축」 사업비 사고이월 2천 1백만원

사업진행 지연으로 '자치경찰지원과'에서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기타 교통활동 지원」, 「무인교통단속장비 구매」 사업비 사고이월 4억 1천 4백만원

총 4건, 4억 3천 4백만원 등

총 7건, 8억 4천 8백만원을 이월하였음.

사. 국고보조금 집행

○ 2022회계연도 예산 중 국고보조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지원' 등 3개 사업에

8억 9천 2백만원

○ 경찰청으로부터 '민간경상보조', '무인단속장비 운영' 등 36개 사업에

151억 9천 1백만원

총 2개 부처 39개 사업에 160억 8천 4백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하여 148억 8천 7백만원을 집행 및 4억 3천 9백만원을 이월하고, 7억 6천 3백만원을 불용 처리했음.

3. 기금결산 : 해당 없음.

4. 채권현재액 : 해당 없음.

5. 채무결산 : 해당 없음.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해당 없음.

7. 물품 증감 및 현재액

2022년도말 자치경찰위원회 및 서울경찰청 등 소관 관리 정수물품은

- 신규취득 1억 6천 9백만원
- 매각·폐기 해당없음
- 2021년도 말 1억 5백만원으로
- 총 수량 115개, 현재액은 2억 7천 4백만원임.

〈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정수물품증감 및 현재액 〉

(단위:수량-개, 금액-천원)

연 번	정부 물품 분류 번호	품명	단 위	정 수	내용 연수	구분	2021 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물품 증감현황										2022 년도말 보유액
								취득					처분					
								구매	관리 전환	양 여	기 타	소계	매 각	관리 전환	양 여	기 타	소계	
합계						수량	12	5	-	-	-	5	-	-	-	-	-	17
합계						금액	105,034	93,495	-	-	-	93,495	-	-	-	-	-	198,529
1	2510 1509	전기승용 자동차	대	4	8	수량	2	2	-	-	-	2	-	-	-	-	-	4
						금액	96,518	90,940	-	-	-	90,940	-	-	-	-	-	187,458
2	4321 1503	노트북 컴퓨터	대	10	6	수량	10	3	-	-	-	3	-	-	-	-	-	13
						금액	8,516	2,555	-	-	-	2,555	-	-	-	-	-	11,071

〈 서울경찰청 및 산하 31개 경찰서 정수물품증감 및 현재액 〉

(단위:수량-개, 금액-천원)

연 번	정부 물품 분류 번호	품명	단 위	정 수	내용 연수	구분	2021 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물품 증감현황										2022 년도말 보유액
								취득					처분					
								구매	관리 전환	양 여	기 타	소계	매 각	관리 전환	양 여	기 타	소계	
합계						수량	-	87	11	-	-	98	-	-	-	-	-	98
합계						금액	-	66,350	9,352	-	-	75,702	-	-	-	-	-	75,702
1	4228 1508	고압증기 멸균기또는 소독기	대	2	11	수량	-	1	-	-	-	1	-	-	-	-	-	1
						금액	-	291	-	-	-	291	-	-	-	-	-	291

2	4010 1787	냉난방기	대	1	9	수량	-	1	1	-	-	1	-	-	-	-	2
						금액	-	2,436	2,436	-	-	2,436	-	-	-	-	-
3	4010 1701	냉방기	대	2	10	수량	-	-	-	-	-	-	-	-	-	-	-
						금액	-	-	-	-	-	-	-	-	-	-	-
4	4321 1503	노트북 컴퓨터	대	7	6	수량	-	8	-	-	-	8	-	-	-	-	8
						금액	-	12,542	-	-	-	12,542	-	-	-	-	-
5	5216 1545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	개	2	6	수량	-	-	-	-	-	-	-	-	-	-	-
						금액	-	-	-	-	-	-	-	-	-	-	-
6	4512 1516	디지털캠코더 또는비디오 카메라	개	161	9	수량	-	74	8	-	-	82	-	-	-	-	82
						금액	-	47,266	3,952	-	-	47,760	-	-	-	-	-
7	4511 1616	비디오 프로젝터	개	2	8	수량	-	3	2	-	-	5	-	-	-	-	5
						금액	-	3,814	2,964	-	-	6,778	-	-	-	-	-

II. 검토의견

1. 세입결산

- 2022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세입은 예산현액 162억 8천 6백만원을 모두 수납하여 10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음.
- 이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자치경찰사무 사업(151억9천만원)과 행정안전부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 사업(8억9천2백만원)의 2022년 세입예산이 모두 국고보조금으로 징수율 100%를 보이고 있음.

〈 2022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결손처분액(D)		미수납액 (E)= (B)-(C)-(D)	예산 수납률 (C/A)	징수율 (C/B)
				불납	시효			
합 계	16,285,674	16,285,674	16,285,674	0	0	0	100%	100%
세외수입	1,802	1,802	1,802	0	0	0	100%	100%
경상적세외수입	11	11	11	0	0	0	100%	100%
이자수입	11	11	11	0	0	0	100%	100%
기타이자수입	11	11	11	0	0	0	100%	100%
임시적세외수입	1,791	1,791	1,791	0	0	0	100%	100%
보조금 반환수입	1,791	1,791	1,791	0	0	0	100%	100%
자체보조금반환수입	1,791	1,791	1,791	0	0	0	100%	100%
지방교부세	200,000	200,000	200,000	0	0	0	100%	100%
지방교부세	200,000	200,000	200,000	0	0	0	100%	100%
지방교부세	200,000	200,000	200,000	0	0	0	100%	100%
특별교부세	200,000	200,000	200,000	0	0	0	100%	100%
보조금	16,083,872	16,083,872	16,083,872	0	0	0	100%	100%
국고보조금 등	16,083,872	16,083,872	16,083,872	0	0	0	100%	100%
국고보조금등	16,083,872	16,083,872	16,083,872	0	0	0	100%	100%
국고보조금	16,083,872	16,083,872	16,083,872	0	0	0	100%	100%

2. 세출결산

- 2022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예산현액 204억 1천 1백만원 중 184억 9천 7백만원을 집행하여 불용률은 1.5%(3억3백만원)로 전년(18.1%)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 2022회계연도 서울시 전체 불용률은 3.7%(일반회계 2.2%, 특별회계 7.5%)임.

〈 2022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D)	집행잔액 (E=A-B-C-D)	불용률 (%)
총 예산	20,410,734	18,496,626	848,098	762,608	303,401	1.5%
사업예산계	20,240,607	18,354,346	848,098	762,608	275,556	1.4%
서울형 자치경찰 조기 정착 기반 마련	1,828,355	1,134,140	314,220	218,461	161,535	8.8%
자치경찰 제도 정비	1,411,355	1,031,360	0	218,461	161,535	11.4%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유기적 결합 추진	417,000	102,780	314,220	0	0	0.0%
시-경찰 협력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구축	1,041,910	843,752	120,000	14,995	63,162	6.1%
시-경찰 협력 강화	155,800	105,855	20,000	14,995	14,949	9.6%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정착	886,110	737,897	100,000	0	48,213	5.4%
효율적인 자치경찰 사무 추진 지원	17,370,342	16,376,453	413,878	529,153	50,859	0.3%
자치경찰 복지 증진 및 인권 감시	2,179,433	2,090,498	0	38,077	50,859	2.3%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15,190,909	14,285,955	413,878	491,076	0	0%
일반예산계	170,127	142,281	0	0	27,846	16.4%
기본경비	170,127	142,281	0	0	27,846	16.4%

가. 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

- 자치경찰위원회의 2022회계연도 예산 전용은 1건 4천 8백만원, 변경 사용도 1건에 5천 4백만원으로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22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전용 현황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전용일			
교통장비, 운영비 (자본보조)	사무관리비	48,170	△ 48,170	0	2022.3.29.	0	0	0 (0%)
	자산및물 품취득비	0	0	48,170	2022.3.29.	48,170	47,981	188 (0.4%)

〈 2022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변경사용 현황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변경사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승인일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	민간경상 사업보조	100,000	△ 54,000	0	2022. 5. 6.	46,000	0	46,000 (100%)
	사회보장 적수혜금	0	0	54,000	2022. 5. 6.	54,000	51,846	2,154 (4%)

- 자치경찰사무 국고보조사업인 “교통안전 활동(교통장비, 운영비(자본보조))” 사업은 교통단속 캠코더 및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용 프린터·압인기 구매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었으나, 세출예산의 성질 및 사용목적에 맞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변경하기 위해 전액(4천8백만원)을 전용하였음.¹⁾

※ ‘사무관리비’는 필기구, 복사용지 등 사무용 잡품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등이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건물 및 공작물 등의 취득비, 물품 구입경비, 자산취득 부대경비(공고료, 수수료 등), 공관 및 관사운영 물품취득비, 정보화시스템 구입비 등임.

1) 예산집행에 있어서 전용이란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지방재정법」 제49조).

- 이는 예산 편성시 통계목 오류에 따른 예산 전용으로 자치경찰사무 사업 예산의 경우 서울경찰청에서 편성 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예산과에 제출하는 절차로 진행되는바,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경찰청의 자치경찰사무 사업 예산 편성 담당자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맞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 사업은 학대 피해아동 발생시 아동의 안전 확보와 학대 예방·방지를 위해 의료 필요물품 패키지를 지급하여 피해아동의 의료적·심리적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사회보장적수혜금(5천4백만원)’으로 변경사용하였음.²⁾
- 당초 서울대병원을 거점으로 광역의료기관 8개소를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서울시 모든 의료기관에 입원·치료하는 학대 피해아동에게 의료물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서울대병원이 지원·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서울시가 주체가 되어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변경사용을 통하여 예산을 집행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 4천 6백만원은 전액 불용처리 하였음.
- 이는 애초부터 체계적인 사업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 예산 편성에 따른 것으로, 자치경찰위원회는 예산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 예산의 변경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실·국장의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 또한, 자치경찰위원회는 향후 예산 편성단계부터 철저한 사전조사 및 추계 등을 통한 예산 편성 노력과 함께,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인 ‘전용’이나 ‘변경사용’ 등을 활용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실소요 예산에 대한 정확하고 적절한 검토 등을 거쳐 적정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나. 행정편의적인 이월 등 지양 필요

- 2022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이월사업비를 살펴보면, 명시이월 3건과 사고이월 4건 총 7건, 8억 4천 8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시키고 있는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해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대한 점검과 예산조정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22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명시 및 사고이월 현황 >

(단위 : 천원)

과목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
세부사업	통계목				명시이월	사고이월	
1인 여성가구 사회안전망 체계 구축	시설비	345,000	51,300	30,780	293,700	20,520	0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	공공 운영비	30,000	0	0	20,000	0	0 (10,000 보조금 반납)
지역맞춤형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사업	시설비	100,000	0	0	100,000	0	0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사무 관리비	434,700	434,700	387,200	0	47,500	0
기타 교통활동 지원	사무 관리비	391,376	390,531	345,031	0	45,500	0 (845 보조금반납)
무인교통단속장비 구매	자산및 물품 취득비	1,221,000	1,134,129	813,251	0	320,878	0 (86,870 보조금 반납)

- “1인 여성가구 사회안전망 체계 구축” 사업은 1인가구 밀집지역에 생활안심(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지에 선정된 자치구가 사업 포기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지 선정 지연 및 주민설명회 지연 등에 따른 사업추진 일정이 지연되어 ‘시설비’를 명시이월(2억9천4백만원) 및 사고이월(2천만원) 시켰으며,
 -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지원” 사업(행정안전부 국고보조사업) ‘공공운영비(2천만원)’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차량구매 지연으로, 무단횡단 교통사고 위험구간 중 주민참여 과정을 통한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지역맞춤형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사업”의 ‘시설비(1억원)’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³⁾가 9월에 교부됨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음.
 - 명시이월(「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은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예산집행 과정에서 사고이월(원인행위를 필수적으로 한 경우 가능)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연도 중에 명시이월 처리하는 것은 편법적인 예산운용 사례라고 할 수 있는바, 자치경찰위원회는 향후 명시이월제도 운용에 있어서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노력과 함께 이월되는 사업의 경우는 적정규모의 예산만을 편성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예산확보 및 철저한 예산집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각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가운데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교부하는 재원을 말함.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사업의 ‘사무관리비(4천7백5십만원)’는 사업 대상지 변경 및 자치구의 안전검사 선행에 따른 환경조성시기 지연으로, “기타 교통활동 지원” 사업의 ‘사무관리비(4천5백5십만원)’는 음주측정기 가스용기 세트 조달구매 납품시기 지연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 구매” 사업의 ‘자산및물품취득비(3억2천1백만원)’는 무인교통단속 장비 추가설치 시설공사가 연도내 완료 어려움에 따라 사고이월 처리하였음.

- “무인교통단속장비 구매” 사업은 8월에 낙찰차액(3억8천만원) 발생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단속장비를 추가 설치하여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이나, 무인교통 감시장치 구입이 12월(원인행위부 및 지출내역서에 무인교통감시장치 구입일자 12.22.)로 당초부터 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당해연도 이행 가능한 사업으로 초과계약을 체결하여 연도 말에 사고이월 하는 것은 ‘사고이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부적정한 이월은 아니었는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무인교통단속장비 구매” 사업의 사고이월 현황 〉

(단위 : 천원)

과목		예산현액 ㉑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㉒	다음연도 이월액㉓		집행잔액 ㉑-㉒-㉓
세부사업	통계목				명시이월	사고이월	
무인교통단속장비 구매	자산및 물품 취득비	1,221,000	1,134,129	813,251	0	320,878	0 (86,870 보조금 반납)

▶ 이월사유 : 무인교통단속장비 추가설치 시설공사가 연도내 완료가 곤란하여 사고이월

- 또한, 동 사업은 예산현액 12억 2천 1백만원에서 8억 1천 3백만원을 집행하고, 3억 2천 1백만원을 사고이월하고도, 불용률이 7.1%(불용액 8천7백만원)로 집행잔액은 반납하였음.

-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나, 지출원인행위 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사고이월은 단지 당해연도 편성예산의 미집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정서비스의 적절한 공급시기 지연을 초래하고, 그 지연의 피해는 서울 시민에게 돌아가게 되고, 사고이월 시키고도 집행잔액 발생은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예산운영으로,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서울경찰청과 31개 경찰서의 사업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지휘·감독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 및 성실한 집행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업

- 2022회계연도는 2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이 있었고, 자치경찰위원회는 제1회 추경에서는 자치경찰지원과의 “기본경비(420만원)” 감액 1건과 자치경찰총괄과의 “서울시 자치경찰제 홍보” 사업에서 8천 5백만원 증액 1건 있었고,
- 제2회 추경은 행정안전부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지원” 사업의 국고보조금(1차 6억2천5백만원) 지원에 따라 시비로 편성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1억 5천만원을 감액하였음.

〈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내역 〉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 예산과목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증감액	증(감액) 사유
		기정	추경		
세출	총 계	2,502,427	2,352,352	△150,075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196,849	175,555	△21,2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성 경비 국비 지원에 따른 감소 ○ 기간제근로자등보수(22백만원→10백만원) ○ 특정업무경비(22백만원→12백만원)
	기본경비(총괄과)	205,171	127,742	△77,4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경비 국비 지원에 따른 감소 ○ 사무관리비(92백만원→52백만원) ○ 공공운영비(4백만원→2백만원) ○ 국내여비(78백만원→43백만원)
	기본경비(협력과)	47,047	21,703	△25,3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경비 국비 지원에 따른 감소 ○ 사무관리비(43백만원→18백만원)
	자치경찰공무원 후생 복지 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	2,015,000	2,006,670	△8,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수당 국비 지원에 따른 감소 ○ 사무관리비(10백만원→2백만원)
	기본경비(지원과)	38,360	20,682	△17,6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경비 국비 지원에 따른 감소 ○ 사무관리비(35백만원→17백만원)

- 자치경찰총괄과의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는 2022년 제2회(7월) 추가 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4천 3백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음에도, 예산현액 대비 62.0% 규모인 2천 7백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이월 및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

과목		당초 예산액	2회 추경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불용률)	불용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자치경찰 위원회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2,249	-12,152	10,097	8,763	0	1,333 (13.2%)	하반기 집행분을 22년 6월 말 교부된 '사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 보조사업으로 대체 집행
	특정업무 경비	21,600	-9,142	12,458	12,376	0	82 (0.7%)	
자치경찰 총괄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91,971	-39,564	52,407	52,247	0	159 (0.3%)	
	공공운영비	4,000	-2,865	1,135	391	0	744 (65.6%)	22년 6월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하반기 차량 운영비용은 국고보조금으로 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으로 관내 출장 수요 급감에 따라 관용 차량 유지, 관리 비용 감소
	국내여비	78,400	-35,000	43,400	16,504	0	26,896 (62.0%)	코로나19 상황으로 관내 출장 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35,000천원을 감추경하였음
자치경찰 협력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43,447	-25,344	18,103	18,093	0	9 (0.1%)	기본경비 집행잔액
자치경찰 지원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35,360	-17,678	17,682	17,681	0	0 (0%)	
자치경찰공무원 후생 복지 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	사무관리비	10,000	-8,330	1,670	1,670	0	0 (0%)	

- ‘국내여비’를 제2차 추경에서 감액 조정하였음에도 과도한 불용(62.0%, 2천7백만원)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당초 ‘국내여비’가 과도하게 편성된 것으로 자치경찰위원회는 향후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적절한 인력 운영

계획 및 구체적인 기준을 통한 예산 수립으로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라. 예산불용 과다 사업 검토

- 2022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예산현액 204억 1천 1백만원 중 184억 9천 7백만원을 집행하여 불용률은 1.5%(3억3백만원)로 전년(18.1%)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 2022회계연도 서울시 전체 불용률은 3.7%(일반회계 2.2%, 특별회계 7.5%)임.

〈 2022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D)	집행잔액 (E=A-B-C-D)	불용률 (%)
총 예산	20,410,734	18,496,626	848,098	762,608	303,401	1.5%
사업예산계	20,240,607	18,354,346	848,098	762,608	275,556	1.4%
서울형 자치경찰 조기정착 기반 마련	1,828,355	1,134,140	314,220	218,461	161,535	8.8%
자치경찰 제도 정비	1,411,355	1,031,360	0	218,461	161,535	11.4%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유기적 결합 추진	417,000	102,780	314,220	0	0	0.0%
시-경찰 협력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구축	1,041,910	843,752	120,000	14,995	63,162	6.1%
시-경찰 협력 강화	155,800	105,855	20,000	14,995	14,949	9.6%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정착	886,110	737,897	100,000	0	48,213	5.4%
효율적인 자치경찰 사무 추진 지원	17,370,342	16,376,453	413,878	529,153	50,859	0.3%
자치경찰 복지 증진 및 인권 감사	2,179,433	2,090,498	0	38,077	50,859	2.3%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15,190,909	14,285,955	413,878	491,076	0	0%
일반예산계	170,127	142,281	0	0	27,846	16.4%
기본경비	170,127	142,281	0	0	27,846	16.4%

○ “공정하고 균형 있는 자치경찰 인사관리 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 5천 5백만원 (불용률 75.4%),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 8천 9백만원 (불용률 59.0%), “자치경찰총괄과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2천 7백만원(불용률 62.0%),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 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 4천 6백만원 (불용률 100%)을 불용처리하였음.

- 과도한 불용이 발생한 사업들은 예산의 불용 사유가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는 다음연도 예산 심의시 삭감조정 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심사를 통한 재정 효율성 증대를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 이상 불용액 발생 현황 및 불용사유 〉

(단위: 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	불 용 사 유
공정하고 균형있는 자치경찰 인사관리 운영	사무관리비	73,600	18,115	55,485	75.4%	인사위원회는 자문기구로서, 현 일원화 모델 下 형식적인 자치경찰 인사제도의 한계로 인해 실질적으로 인사 관련 심의의결할 수 있는 안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개최횟수가 적었음. 고충심사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고충심사 청구가 접수된 경우 개최하는 것으로, 고충심사청구 건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개최횟수가 적었음. 또한, 국고보조 운영비 지급에 따라 표창장 및 임용장 제작 대금은 일부 국비로 집행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151,000	61,929	89,071	59.0%	자치경찰제 출범 초기 단계에서 다음연도 회의 개최 횟수 및 수당지급액 규모를 예상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22년 6월 행안부에서 지원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용' 국고 보조금을 활용하여 22년 7~12월 자치경찰 위원회의 회의 수당을 지급하여 집행잔액이 발생
기 본 경 비 (자 치 경 찰 총 괄 과)	공공운영비	1,135	391	744	65.6%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비대면 업무협약 및 회의 방식 확대로 관내, 외 출장 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관용차량 운행횟수 급감으로 전기충전비 및 차량관리비에서 사용하는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발생
	국내여비	43,400	16,504	26,896	62.0%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비대면 업무협약 외 회의 방식 확대로 관내, 외 출장 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국내여비 집행잔액 발생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사유
					%	
자치경찰 유관기관 상시협력 체계 구축	사무관리비	55,800	40,855	14,945	26.8%	연도 중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시도 자치경찰 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 교부됨에 따라 집행 계획 변경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	민간경상 사업보조	46,000	-	46,000	100%	간병비와기타물품비(46백만원) 국가부처 사업 확대에 대체지원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미집행

- 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위원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위원회 회의 수당은 '사무관리비'로 편성되나,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사무관리비' 불용률 59.0%)", "공정하고 균형 있는 자치경찰 인사관리 운영('사무관리비' 불용률 75.4%)" 사업은 위원회 수당으로 편성된 '사무관리비'의 불용이 높은바,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연도 '사무관리비'로 편성되는 위원회 수당 편성에 있어서, 무분별한 편성 및 집행은 지양하고,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 후 실소요액을 기반으로 한 적정규모의 예산편성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개최실적 등 〉

○ 2022년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개최실적 - 41회(25차~66차)

○ 2021년, 2022년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예산편성 및 집행 상세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예산	결산	집행율	집행내역	비고
2021년	26,000 (사무관리비)	29,600 (사무관리비)	113.8% (사무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수당 : 14,500 · 심사수당 : 14,100 · 교통비용 : 1,000 	· 2021년 7월29일부터 온라인 회의 참석 수당 상향(5만원 → 15만원)
	5,000 (업무추진비)	5,000 (업무추진비)	100% (업무추진비)	·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후 식사 대금 등 집행	· 심사 수당 부족분은 상반기 코로나로 미집행한 '자치경찰 제도 실시' 금액에서 집행
2022년	22,249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10,097	86.8%	· 1~6월 초단시간 근로자 임금 지급	· 2022. 6. 28. 국고보조금(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 교부 후, 필요경비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대체 집행
	151,000 (사무관리비)	151,000	4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수당: 25,668 · 위원회 운영 물품 등: 6,961 · 백서제작: 29,300 	

2,00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0	99.9%	· 자치경찰위원회 안건 검토 간담회 등
21,600 (특정업무경비)	12,458	99.3%	· 1~7월 특정업무경비 지급

※ 자치경찰위원회 별도 제출자료(2023. 6. 13.) 재인용.

- 또한, “공정하고 균형 있는 자치경찰 인사관리 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 불용사유를 살펴보면, “인사위원회는 자문기구로서, 현 자치경찰 일원화 모델에서 형식적인 자치경찰 인사제도의 한계로 인해 실질적으로 인사 관련 심의·의결할 수 있는 안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개최 횟수가 적다”고 하고 있음.

〈 인사위원회 및 고충심사위원회 회의 개최실적 등 〉

- 2022년 인사위원회 회의 개최실적 - 3회(3. 30. / 6. 29. / 11. 30.)
- 2022년 고충심사위원회 회의 개최실적 - 3회(향후 운용방안 보고, 인사제도 개선, 고충심사위원회 홍보 및 사례연구 건으로 3회 개최)
- 2022년 인사위원회 및 고충심사위원회 운영 예산편성 및 집행 상세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예산	결산	집행율	집행내역	비 고
2022년	73,600 사무관리비	73,600	24.6%	· 고충심사위원 수당: 2,400 · 인사위원회 수당: 2,000 · 회의운영 물품 및 임명장, 표창장 등: 13,715	· 2022. 6. 28. 국고보조금(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 교부 후, 필요경비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대체 집행
	6,00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000	99.2%	· 고충심사위원회, 인사위원 회 등 인사 업무 추진 간담회 비용 지급	

※ 자치경찰위원회 별도 제출자료(2023. 6. 13.) 재인용.

- 이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별도 승진 인원 배정 및 시·도 또는 자치경찰위원회 내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건의 등 실질적인 임용권이 행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관련 법령(「경찰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10호, 제26조,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3항, 제17조 및 제31조,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제1항,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4조, 제16조,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1조)에 따라 서울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감독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및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인사위원회와 고충심사위원회 운영함.

※ 그러나,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담당 경찰공무원의 승진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승진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법률상 규정이 없는데,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경찰청의 승진심사위원회를 거친 후 승진자 명단만 통보받아 구체적인 승진 사유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 단순히 결재(시장) 및 의결(자치경찰위원회)만 하는 형태임.

「경찰공무원법」 제7조(임용권자) ③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국가수사본부장, 소속 기관의 장,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 시·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승진심사위원회) ① 제15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를 위하여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경찰청·해양경찰청·시·도경찰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지방해양경찰관서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승진심사위원회는 제15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승진대상자 명부의 선순위자(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승진시험에 합격된 승진후보자는 제외한다) 순으로 승진시키려는 결원의 5배수의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승진후보자를 심사·선발한다.

③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관할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고충심사위원회) ①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한다.

③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마. 서울경찰청 및 31개 경찰서의 “자치경찰사무” 사업 관리 철저 필요

-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서울시 자치경찰사무 사업은 서울경찰청 및 31개 경찰서에서 총 36개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2회계연도 자치경찰사무 사업 예산은 국고보조금(이하 ‘경찰청 보조사업’)으로 서울시가 받아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으로 배정되고,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서울경찰청과 31개 경찰서로 재배정하였음.

〈 2022년 서울 자치경찰사무 사업내역 〉

세부사업명	건수	세부사업명	건수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자치)	10	아동청소년보호 및 수사활동(자치)	13
아동안전지킴이(자치)	3	교통안전교육홍보(자치)	2
교통안전활동(자치)	3	교통과학장비관리(자치)	5

- 2022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예산 현액 204억 1천만원 중 국고보조금이 78.8%(160억8천3백만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불용률은 5.2%(불용액 10억6천6백만원이고, 국고보조반납금 7억6천3백만원 포함)이고,
- ※ 2022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불용률은 1.5%(불용액은 3억3백만원). 이는 국고보조금 반납액까지 포함된 수치임.
- ※ 2022회계연도 서울시 전체 불용률은 3.7%(일반회계 2.2%, 특별회계 7.5%)임.

〈 2022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국고보조금 현황 〉

(단위 : 천원, %)

사업명	예산현액(A)	집행액(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률(%)
자치경찰위원회 총 예산	20,410,734	18,496,626	848,098	1,066,010	5.2%
국고보조금 합 계	16,083,872	14,742,395	433,878	907,599	5.6%

행정안전부 보조사업	892,963	601,430	20,000	271,533	30.4%
경찰청 보조사업(총 36개)	15,190,909	14,140,965	413,878	636,066	4.2%

※ 국고보조금 반납금 제외, 자치경찰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자료 재편집하였음.

〈 2022년 국고보조사업 정산 총괄 현황(세출) 〉

('23. 5. 기준 /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예산 (A=B+C+D)	집행액 (B)	차기 이월액(C)	당기집행 잔액(D)	이자액 (E)	반납총액 (F=D+E)	집행률 (A/B, %)
합 계 (통계목 국고보조금 반환금)	16,083,872	14,742,395	433,878	907,599	132,122	1,039,720	91.7
행정안전부 보조사업 (총 3개, 각 부서 1개)	892,963	601,430	20,000	271,533	7,934	279,466	67.4
자치경찰총괄과	742,000	523,539	-	218,461	6,192	224,653	70.6
자치경찰협력과	90,000	55,005	20,000	14,995	787	15,782	61.1
자치경찰지원과	60,963	22,887	-	38,077	954	39,031	37.5
경찰청 보조사업 (총 36개, 자치경찰지원과)	15,190,909	14,140,965	413,878	636,066	124,188	760,254	93.1

※ 이자발생 산출 기준일: 2023. 7. 31.

※ 자치경찰위원회 별도 제출자료(2023. 6. 7.) 재인용.

- 이 중 2022회계연도 경찰청 보조사업 예산 현액은 151억 9천만원 중 141억 4천 1백만원을 집행하여 불용률은 4.2%(불용액 6억3천6백만원)로,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경찰청 등에서 수행하는 자치경찰사무 사업 예산 집행에 대한 면밀한 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2022회계연도 경찰청 보조사업 결산(7% 이상 또는 1억원 이상 불용) 〉

(단위 : 천원, %)

사업명	예산현액(A)	집행액(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률(%)
경찰청 보조사업(총 36개)	15,190,909	14,140,965	413,878	636,066	4.2%
방법용 CCTV운영	152,400	120,588	0	31,812	20.9%
지하철경찰대 운영 등	198,800	173,944	0	24,856	12.5%
아동안전지킴이 민간경상보조	6,241,389	6,096,757,040	0	144,632	2.3%
무인교통단속 장비 구매	1,221,000	813,252	320,878	86,870	7.1%
스쿨존 무인단속 장비 운영	979,213	704,879	0	274,334	28.0%

- “무인교통단속 장비 구매” 사업은 교통사고 위험·다발 구간에 무인단속 장비 설치를 통해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 사망사고 감소 추진을 위한 것으로, 12억 2천 1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8억 1천 3백만원을 집행 하고, 3억 2천 1백만원을 사고이월 시키고 7.1%의 불용률(불용액 8천7백만원)을 보이고 있음.

〈 “무인교통단속 장비 구매” 사업 집행현황 〉

(단위 : 천원, %)

사업명	예산현액(A)	집행액(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률(%)
무인교통단속 장비 구매	1,221,000	813,252	320,878	86,870	7.1%

- 동 사업은 8월에 낙찰차액 3억 8천만원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설치를 위해 3억 2천 1백만원을 사고이월 시키고 있는바, 이는 당초 예산안의 세부 산출내역에서 단가(과속 3천만원, 다기능 3천2백만원, 이동식 1천7백만원)를 너무 높게 책정함에 따라 과도한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 2022년 “무인교통단속 장비 구매” 세부산출내역 〉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자산및물품취득비		○ 무인교통단속장비 구매 과속 6대*30,000천원+다가능 32대*32,000천원+이동식 1대*17,000천원 = 1,221,000천원

- 낙찰차액으로 추가로 연도 내에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당해연도 이월 가능한 사업으로 초과계약을 체결하여(무인교통감시장치 구입이 12월) 연도말에 사고이월시키고도, 집행잔액이 8천 7백만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안에 편성된 무인교통단속장비 단가 및 대수와 상이하게 예산을 집행하였음에도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바, 당초 예산 편성시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겠음.
- 또한, 소요 예산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와 치밀한 사업계획의 수립을 통한 사업추진이 아닌 주먹구구식 자의적 운영으로 의회의 심의 및 의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시의회를 무시한 예산 집행 형태라고 할 것임.

〈 “무인교통단속장비 구매” 사업의 사고이월 현황 〉

(단위 : 천원)

과목		예산현액 ㉓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㉔	다음연도 이월액㉕		집행잔액 ㉓-㉔-㉕
					명시이월	사고이월	
세부사업	통계목						
무인교통단속장비 구매	자산및 물품 취득비	1,221,000	1,134,129	813,251	0	320,878	0 (86,870 보조금 반납)

▶ 이월사유 : 무인교통단속장비 추가설치 시설공사가 연도내 완료가 곤란하여 사고이월

〈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 현황('22년 10월말) 〉

(단위 : 대)

총 계	고정식				이동식
	소 계	과속	다기능 (과속·신호)	구간*	
1,677	1,655	430	1,173	52(9개소)	22

* 구간단속장비 설치 추진 현황('22.10.현재)

<운영중 9개> 내부순환로, 강변북로, 남산2, 동부간선(상향), 서부간선, 올림픽로, 신월↔여의, 송미초, 우면산터널(과천방향)

<설치중 2개> 동부간선(하향), 우면산터널(서울방향)

○ “스쿨존 무인단속 장비 운영”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각종 공공요금 납부 및 정기검사 등 수행을 위한 것으로, 예산 현액은 9억 7천 9백만원 중 7억 5백만원을 집행하여 28.0%의 불용률(불용액 2억7천4백만원)을 보이고 있음.

※ “스쿨 존(School Zone)”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지정된 일정 구간을 말하며,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음(「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참조).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 ④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또한,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 구역의 도로 중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및 [별표 8의2]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기준에 따라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도로교통법」 제12조제4항).

〈 “스쿨존 무인단속 장비 운영” 사업 집행현황 〉

(단위 : 천원, %)

사업명	예산현액(A)	집행액(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률(%)
스쿨존 무인단속 장비 운영	979,213	704,879	0	274,334	28.0%

〈 서울시 자치구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 〉

연 번	자 치 구	어린이보호구역(개)	연 번	자 치 구	어린이보호구역(개)
1	종로구	47	14	마포구	51
2	중구	43	15	양천구	89
3	용산구	37	16	강서구	89
4	성동구	50	17	구로구	59
5	광진구	75	18	금천구	44
6	동대문구	73	19	영등포구	68
7	중랑구	41	20	동작구	61
8	성북구	102	21	관악구	70
9	강북구	39	22	서초구	91
10	도봉구	66	23	강남구	112
11	노원구	116	24	송파구	91
12	은평구	70	25	강동구	85
13	서대문구	40	총 계		1,709

※ 자치경찰위원회 별도 제출자료(2023. 6. 13.) 재인용.

- 불용사유를 살펴보면, 2020년도에 서울시 자치구에서 스쿨존 무인단속 장비를 설치(486대)하고, 서울경찰청에 이관·운영하여야 하나, 377대만 이관 되어, 109대에 대한 장비 회선료 및 보험료, 장비 정기검사비 미집행에 따른 것이라고 하고 있음.
- 이는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으로, 행정안전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 계획 수립기준』에서는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취소·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음에도 집행불가능한 예산을 조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겠음.
- 가용재원을 사장시킴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7조4)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 사업 예산에 있어서도, 편성된 예산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효율적 집행을 위한 지휘·감독은 물론, 당초 예산 설계와 달리 예산 불용이 예상 될 경우에는 감추경 등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더욱이, 자치경찰사무 예산이 2022년에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었으나,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2023년부터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는 전환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아닌 지방소비세 인상(21% → 25.3%)을 통한 비용보전 방식으로 변경되었는바, 향후 자치경찰사무 사업 예산에 대하여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경찰청과 31개 경찰서의 적절한 지휘·감독을 통한 효율적 재정운용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4) 「지방자치법」 제137조(건전재정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바. 사무관리비 편성 및 집행 개선 필요

- 2022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사업별·부서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액은 50억 5천 5백만원이며, 집행액은 50억 9천 6백만원으로 91.7%를 집행(집행잔액 4억5천8백만원, 불용률 8.3%)하였으나, ‘사무관리비’의 세부 산출기초별로 예산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편성한 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않은 예산이 있는가 하면, 당초 편성예산보다 초과하여 집행하거나 편성한 예산을 전혀 다른 항목으로 집행한 항목이 있었음.
- 자치경찰협력과 “기본경비”중 ‘사무관리비’에서 ‘국회 및 시의회 자료 인쇄(1,200만원)’와 ‘업무보고 및 시·경찰 협력계획 인쇄등(1,200만원)’, “자치경찰 교육 및 인권·감사 운영” 사업의 ‘감사처분심의회 운영(500만원)’ 등은 예산편성액 전액을 불용 처리 하였는바, 자치경찰위원회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세출 예산 편성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사무관리비’ 중 예산현액 전액 불용(산출기초) 내역 〉

(단위: 천원, %)

부서 및 세부사업	세부 산출기초	2022회계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자치경찰협력과 기본경비	소규모 수선비	90	0	90	0.0%
	행정장비수리비	504	0	504	0.0%
	국회 및 시의회 자료 인쇄	12,000	0	12,000	0.0%
	업무보고 및 시·경찰 협력계획 인쇄등	12,000	0	12,000	0.0%
	협의회 회의자료 등 인쇄	500	0	500	0.0%
자치경찰지원과 자치경찰 교육 및 인권·감사 운영	자치경찰제도 특강 강사료	1,600	0	1,600	0.0%
	자치경찰제도 특강 운영경비(대관료 등)	1,400	0	1,400	0.0%
	감사처분심의회 운영	5,000	0	5,000	0.0%

- 또한, 사업별 ‘사무관리비’의 산출기초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 자치경찰제 홍보” 사업의 ‘사무관리비’ 중 ‘홍보물 제작’은 3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7천만원을 집행하여 3천 5백만원(200.2%)을 초과 지출하고, “협업치안인프라 강화” 사업의 ‘사무관리비’ 중 ‘우수방법대원 표창 및 부상품 구입’은 21만원을 편성하였으나 447만원을 집행하여 426만원 (2,128.0%)을 초과 집행하는 등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원칙”을 전면적으로 위배한 예산 집행이라고 하겠음.

〈 ‘사무관리비’ 세부 산출기초별 100% 이상 초과 집행현황 〉

(단위: 천원, %)

부서	세부사업	세부 산출기초	2022회계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자치경찰총괄과	서울시 자치경찰제 홍보	체험수기 공모전	15,000	24,033	-9,033	160.2%
		시민참여 모바일 이벤트	15,000	16,481	-1,481	109.8%
		홍보물 제작(모션그래픽, 리플릿)	35,000	70,056	-35,056	200.2%
	서울시 치안 연계사업 지원 강화	합동순찰 등 현장 대응 지원	15,000	71,933	-56,933	479.5%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	물품구매비용, 급량비 등	68,360	84,859	-16,499	124.1%
		자치경찰위원회 운영비용	75,000	121,345	-46,345	161.8%
자치경찰 인사, 고충심사위원회 운영비용		15,000	18,677	-3,677	124.5%	
자치경찰협력과	자치경찰 유관기관 상시협력 체계 구축	자료집 제작	5,400	18,055	-12,655	334.3%
	지역맞춤형 자치경찰 주민체감 사업	사례집 발간	6,400	8,600	-2,200	134.4%
자치경찰지원과	자치경찰 교육 및 인권·감사 운영	자치경찰제도 특강 교육책자 제작	10,000	14,000	-4,000	140.0%
	협업치안인프라 강화	자율방법대 간담회	1,980	3,699	-1,719	186.8%
		방법협력단체 안전장비 구입	78,440	123,316	-44,876	157.2%
		우수방법대원 표창 및 부상품 구입	210	4,468	-4,258	2,128.0%
학교폭력 예방활동	범죄예방교실 예방교육 및 간담회	263,100	291,759	-28,659	111.0%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5,500	5,794	-294	105.3%
위기청소년 선도	선도프로그램 운영비	205,050	205,859	-809	100.4%
	위기청소년 발굴연계	36,760	148,873	-112,113	405.0%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 체계	모바일 지문사전등록 홍보	21,620	22,942	-1,322	106.0%
	지문사전등록장비 등 임대	6,050	6,509	-459	107.6%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아동안전지킴이집 시설 운영지원	58,980	74,974	-15,994	127.0%
	아동안전지킴이집 홍보	19,740	49,481	-29,741	250.6%
가정폭력 등 통합 솔루션팀 운영	사례회의 운영비	7,450	7,647	-197	102.6%
직접경비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및 홍보	6,609	8,106	-1,497	122.6%
교통장비, 운영비	교통외근용 안전조끼	26,540	29,515	-2,975	111.2%
기타 교통활동 지원	교통경찰 소모품 등 구매	45,229	101,135	-55,906	223.6%
	교통안전 인쇄비 등	81,844	90,681	-8,837	110.8%

- ‘사무관리비’가 비교적 탄력적으로 사용가능한 예산이라고는 하나, 예산의 탄력적 사용의 한계는 명확히 존재한다고 할 것인바, 자치경찰위원회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에 따라 편성된 예산보다 과다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예산편성 당시부터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산출기초에 근거한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사.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리 철저 필요

- 2022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민간경상사업보조⁵⁾는 총 6건으로 교부액 71억 8천 6백만원 중 70억 3천 8백만원을 집행하고, 1억 4천 7백만원(2.0%)을 불용하여 반납하였음.

5)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을 말함.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민간경상보조사업' 결산 현황 >

기관명	사업명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부당 집행액	부당 집행액 반납액	집행잔액 반납액
서울 모범 운전자연합회	자치행정과 치안행정이 연계된 시민 교통편의 제공	111,177	111,177	0	0	0	0
서울 녹색 어머니연합회	자치행정과 치안행정이 연계된 시민 교통편의 제공	64,883	64,883	0	0	0	0
서울시 자율방범연합회	자율방범대연합회 지원	100,000	97,376	2,623,	0	0	2,623
대한노인회	민간경상보조	6,241,389	6,096,757	144,632	0	0	144,632
대한노인회	부대경비	186,678	186,678	0	0	0	0
서울 모범 운전자연합회, 서울 녹색 어머니연합회	협력단체 지원	481,894	481,534	360	0	0	360
합 계		7,186,021	7,038,405	147,615	0	0	147,615

○ 이 중 대한노인회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지원을 통한 아동청소년 안전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62억 4천 1백만원을 교부하여 60억 9천 6백만원을 집행하고, 1억 4천 4백만원(불용률 2.4%)을 반납하였음.

※ '아동안전지킴이'는 「아동복지법」 제33조에 따라 경찰, 교사 등 은퇴한 전문 인력을 아동안전지킴이로 선발하여 초등학교 주변 아동범죄 예방(실종, 학대 등) 및 청소년 선도활동 보조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

「아동복지법」 제33조(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 및 유괴 등 이동에 대한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순찰활동 및 이동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을 배치·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순찰활동 및 이동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업무범위·활용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의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 운영규칙(서울특별시경찰청 예규 제14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 아동안전지킴이 업무처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아동안전지킴이”란 「아동복지법」 제33조에 따라 아동 성폭력, 아동학대, 학교 폭력, 실종·유괴 등 아동에 대한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순찰활동 및 아동안전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소속) 아동안전지킴이는 각 경찰서장이 위촉하며, 지구대(팀)장 또는 파출소장 소속 하에 활동한다.

- 민간보조사업 예산도 명확한 산출기초에 따라 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예산편성 대비 과도한 불용액(1억4천4백만원)이 발생하였는바, 자치경찰위원회는 소관 보조사업 예산에 대하여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들어간 경비를 자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들어간 경비를 자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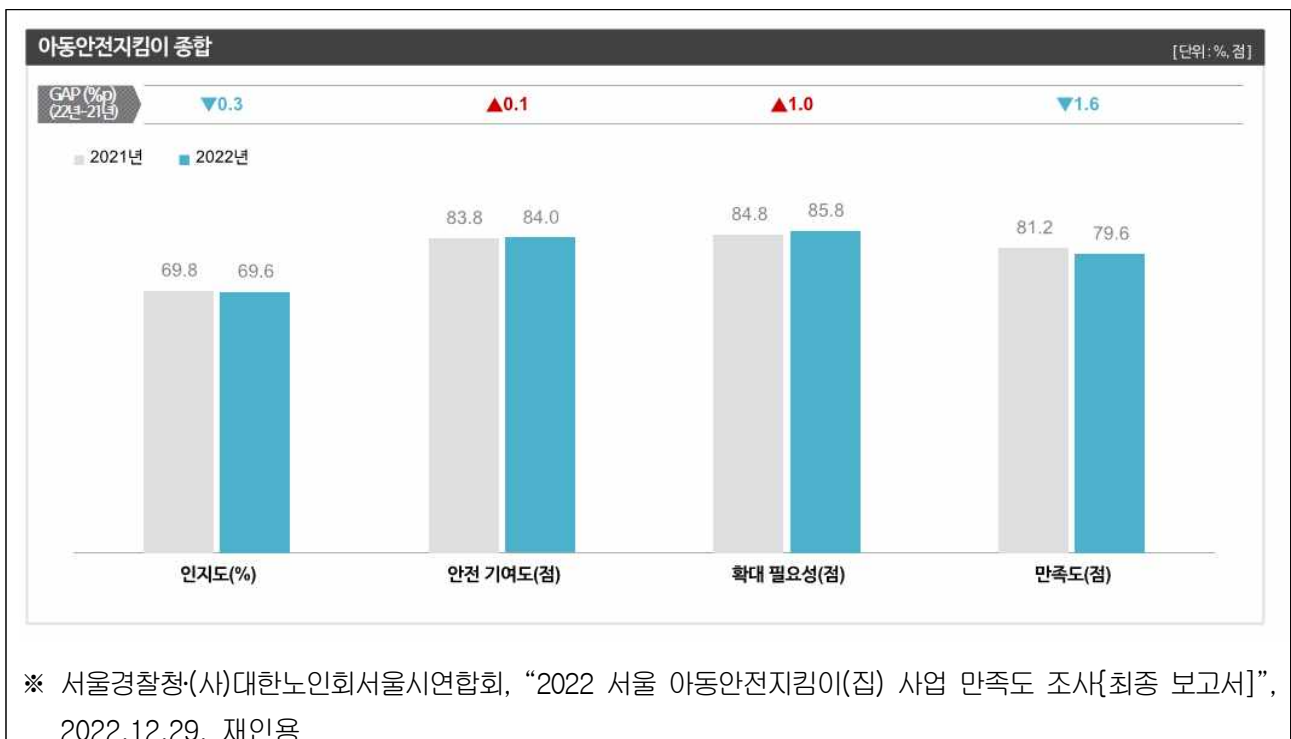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 또한,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안전기여도는 전년(83.8%)보다 0.1%(84.0%) 증가하였고, 만족도는 전년(81.2%)보다 1.6%(79.6%) 감소하였고, “아동안전지킴이” 개선으로 학부모와 교사들은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활동 시간 증대’와 ‘인원 추가 및 확대’라고 하였는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2022년 아동안전지킴이 지표 종합 결과 〉



※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만족도 조사는 아동, 학부모, 교사, 아동안전지킴이를 대상으로 약 1개월간 우편, 온라인 조사 등의 방법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 진행한 결과임.

- 다음으로, “교통협력단체 지원” 사업은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협력단체 지원을 통한 효율적인 교통안전 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보조금 결제는 전용카드 또는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함이 원칙으로 2022년 교통협력단체 보조금 집행(정산) 점검 결과보고를 살펴보면, “목적에 맞게 보조금을 사용하고 지출결의서 등 필요서류를 보조금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였으나, 서울 모범운전자연합회의 계좌이체 사용률(100%)이 높다”는 지적 등 교통협력단체 보조금카드 사용률(36.85%)이 낮은바, 자치경찰위원회는 보조금 사업의 규정에 맞는 예산 집행을 위해 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사전교육 등 보조금 정산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교통협력단체 지원”의 ‘민간경상사업보조’ 집행실태 〉

(단위 : 천원)

구 분	집행액	지출방법(사용률)		
		보조금카드	제로페이	계좌이체
민간경상사업보조	176,060	64,883 (36.85%)	- (0%)	111,177 (63.15%)

※ 지방보조금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카드 또는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를 사용함이 원칙이고, 카드나 제로페이 결제가 모두 가능한 경우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을 위해 제로페이를 우선 집행해야 함(서울시,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2022년 3월, 97면 참조).

전문위원	김정덕	입법조사관	최문숙
------	-----	-------	-----